

# ‘저널리즘 로봇’ 실험하는 독일, 윤리적·법률적 쟁점은?

권용덕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 I. 들어가며

인공지능(AI)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AI가 이미지 데이터를 후처리(Post Processing)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반도체 회사들은 딥러닝과 AI 구현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인 NPU(Neural Processing Unit)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OpenAI)가 챗(Chat)GPT-3를 발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챗 GPT-3.5가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챗GPT-4가 유료 회원 상대로 서비스되고 있다.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전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를 의미한다.<sup>1)</sup> 챗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인간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 챗 GPT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생성형 AI를 향한 큰 관심이 촉발됐음을 알 수 있다.<sup>2)</sup>

1) Perrigo, B. (2023. 4. 13). The A to Z Artificial Intelligence. <Time>. URL: <https://time.com/6271657/a-to-z-of-artificial-intelligence/>

2) 김미정 (2023. 2. 3). 챗GPT, 두 달 만에 월 이용자 1억 명 돌파...틱톡보다 빨랐다. <ZDNet Korea>. URL: <https://zdnet.co.kr/view/?no=20230203153950>

생성형 AI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직업분야를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이미 날씨, 스포츠, 금융 등 뉴스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화된 기사작성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산업 측면에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역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널리즘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독일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생성형 AI의 도입이 늦었음을 인식하고 있다.<sup>3)</sup> 독일 언론사들은 생성형 AI를 기사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도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4)</sup> 독일기자협회(DJV)는 최근 생성형 AI로 작성된 콘텐츠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입장문을 긴급 발표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AI가 기자(Redakteur)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입장문은 특히, AI가 윤리와 가치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언론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sup>5)</sup> 바이에른주(州) 공영방송(Bayerischer Rundfunk)도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AI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수립하기도 했다.<sup>6)</sup>

독일은 로봇이 자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더라도 저널리스트가 제작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로봇은 저널리스트의 보조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

## II. 생성형 AI의 ‘저널리즘 실험’

생성형 AI의 이용은 다방면에서 가능하다.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고 간단한 키워드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

독일의 유력 출판기업 부르다(Burda)는 2022년 5월 30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사의 월간 요리전문잡지인 <리자-요리와 빵굽기>(Lisa-Kochen und Backen)의 최신 특별호에서 ‘99가지 파스타 레시피’(99 Pasta-Rezepte)를 발행했다.

99가지 파스타 레시피를 담은 해당 잡지는 ‘미드저니’(Midjourney)와 ‘챗GPT’ 등 두 가지

3) Kettig, S. (2023). Künstliche Intelligenz im Journalismus – quo vadis? (NEUE GEGENWART), Ausgabe 61. URL: <http://www.neuegegenwart.de/ausgabe61/ki-journalismus.html>

4) Horn, C. (2019. 8. 1). Wenn Computerprogramme Zeitungsartikel schreiben. (NDR). URL: <https://www.ndr.de/nachrichten/netzwelt/Kuenstliche-Intelligenz-im-Journalismus-,kuenstlicheintelligenz128.html>

5) Der Spiegel (2023. 4. 23). Journalistenverband verlangt klare Regeln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Der Spiegel). URL: <https://www.spiegel.de/kultur/journalistenverband-fordert-klare-regeln-fuer-kuenstliche-intelligenz-a-0c7b909b-53c4-4c7d-badb-2099220d9d19>

6) HMS (2023. 8. 16). Wie Künstliche Intelligenz mehr Ethische Intelligenz in Redaktionen bringen kann. (HMS). URL: <https://www.hamburgmediaschool.com/blog/von-ki-zu-ethi-wie-kuenstliche-intelligenz-mehr-ethische-intelligenz-in-redaktionen-bringen-kann>



〈그림 1〉 키워드 ‘생성형 AI와 저널리즘에 관한 이미지’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Microsoft Image Creator)

위한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것이다. 출판사 측은 AI가 인쇄 및 디지털 제품 제작의 워크플로우(workflow)를 얼마나 의미 있게 지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그러나 요리 이미지와 함께 재료목록 및 요리과정을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긴

생성형 AI로 제작되었다. 미드저니는 잡지에서 활용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였고, 챗GPT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작성하였으나 출판사 측은 독자들에게 해당 잡지가 AI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sup>7)</sup>

제2공영방송 체트테에프(ZDF)에 따르면, 두 AI 프로그램은 요리 레시피에 대해 사전에 특별히 학습을 하지 않았으며, 출판사 담당 직원이 챗GPT가 작성한 텍스트에 약간의 도움을 준 것 외에는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는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특히 이번 특별호는 부르다 출판사 측이 생성형 AI를 실험하기



〈그림 2〉 ‘99가지 파스타 레시피’ 표지



〈그림 3〉 ‘99가지 파스타 레시피’ 삽화

7) Heinrich, J. (2023. 5. 20). Wenn die KI komplette Zeitschriften erstellt. (ZDF). URL: <https://www.zdf.de/nachrichten/panorama/ki-journalismus-chatgpt-midjourney-zeitschrift-burda-verlag-100.html>

하지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이미지가 정교하지 않다.<sup>8)</sup> 이에 AI 활용에 있어 편집자의 창의성과 품질 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일간 슈투트가르터 차이퉁(Stuttgarter Zeitung)은 미세먼지 레이더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지역 미세먼지 현황을 보도하고 있다.<sup>9)</sup> 또한, 두이스부르크 지역방송 '슈튜디오 47'(Studio 47)은 '봇캐스트'(BotCast)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텍스트 작성, 이미지 검색 및 편집, 더빙 등 단편 뉴스영상을 제작한다. 이를 통해 최대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을 10분 만에 제작해내고 있다.<sup>10)</sup> 지역 유력 매체인 노츠 미디어그룹(NOZ Mediengruppe)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구를 직접 개발 중이다. 그 중 하나인 텍스트마틱(Textomatic)이라는 생성형 AI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Schleswig-Holstein)의 지역 일기 예보를 제공하는 등 실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튀빙겐주(州)(Tübingen)의 사이버 밸리(Cyber Valley)에서는 AI를 통한 라디오 진행자의 음성을 합성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 음성 합성기술은 청취자가 새벽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라디오 교통방송 진행자의 음성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게 하여 청취자와 방송사 측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11)</sup>

한편, 생성형 AI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하게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있다.<sup>12)</sup> 저널리스트는 이를 도구삼아 산재해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속에서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스토리를 선별하여 취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검색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하여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나 논쟁을 발굴해낼 수도 있다.<sup>13)</sup>

앞서 언급한 노츠 미디어그룹의 개발팀인 'HHLab'은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댓글을 걸러낼 수 있는 생성형 AI를 개발했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온라인판은 이를 활용해 혐오 댓글을 걸러내고 있으며, 인포그래픽 제작, 기사 작성, 오디오 제작 등에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저널리스트의 취재 보도를 위한 작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8) <그림 3>에서 부자연스러운 새우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위의 ZDF 기사(주 7)를 참조.

9) Kettig, S. (2023). Ebenda.

10) Deutschlandfunk (2023. 3. 2). Was kann KI im Journalismus? <Deutschlandfunk>. URL: <https://www.deutschlandfunk.de/ki-im-journalismus-100.html>

11) Horn, C. (2019. 8. 1). Ebenda.

12) Pinker, A. (2023. 3. 19). Generative KI: Die neue Ära des Journalismus? <Medialist Innovation>. URL: <https://medialist.info/2023/03/19/generative-ki-die-neue-aera-des-journalismus/>

13) LMU (2022. 2. 19). Forschungsprojekt: KI im Lokaljournalismus. <LMU>. URL: <https://www.lmu.de/de/newsroom/newsuebersicht/news/forschungsprojekt-ki-im-lokaljournalismus.html>

HHLab의 차기 개발 목표는 언론사가 독자의 관심과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AI” 소프트웨어이다.<sup>14)</sup>

### III. AI가 만든 저널리즘과 윤리적 쟁점

#### 1.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

AI를 저널리즘에 활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장점과 함께 수많은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현재 챗GPT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챗GPT-3.5를 출시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 챗GPT-4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저널리즘에 가져올 윤리적·법률적 문제가 대두된다.

윤리 분야 전문가들은 AI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주로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AI가 편향적 학습 데이터로 인해 편견을 내재화할 수 있고, 이로부터 차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둘째, AI가 점점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노동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허위정보의 생성 및 확산 가능성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대학교의 티로 하겐도르프(Thilo Hagendorff) 박사는 윤리적 위험과 관련하여 7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첫째, 고정관념이나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나타나는 차별의 위험성이다. 둘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셋째, 허위의 정보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넷째, 이 AI는 IT 공격용 코드를 생성하는 데 오용될 위험, 즉 이용자의 악의적 사용 의도에 따른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이용자가 이 AI를 의인화하거나 과도하게 신뢰하여 사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AI의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 여섯째, AI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일곱째, AI를 학습시키고 사용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소비는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sup>15)</sup>

14) Horn, C. (2019. 8. 1). Ebenda

15)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Risiken aktueller KI-Forschung. <SMCG>. URL: <https://www.science-mediacyenter.de/alle-angebote/rapid-reaction/details/news/risiken-aktueller-ki-forschung/>

하겐도르프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AI 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하지만<sup>16)</sup>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 기술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가져올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AI 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원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간과 AI 식별 가능해야

앞서 지적한 윤리적 쟁점과 관련하여 튀빙겐(Tuebingen) 대학교의 예시카 헤젠(Jessica Heesen) 박사는 생성형 AI의 빠른 발전이 인간과 기계의 의사소통을 구분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헤젠은 언어에 대해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인간과 기계 사이의 소통에 있어 신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콘텐츠를 만든 주체가 사람인지 AI인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소통의 진실성과 목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AI가 제작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에 의무적으로 식별표(label)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젠은 거대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AI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막대한 데이터<sup>18)</sup>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AI를 설계할 때 시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복리에 기여하는 본래의 연구목적에 맞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오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그는 “기술은 인간의 가치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9)</sup> 실제로, AI 이용이 증가하면 기존 저널리스트에게는 일자리 상실, 독자에게는 AI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이 연구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은 “챗GPT-4보다 더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을 6개월간 미룰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sup>20)</sup>

AI가 인간의 통제 하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저널리즘 영역에서 AI를 ‘보조수단’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시각이다. 저널리스트는 편집

16) BMWK (2021. 9. 1). Ethische Leitlinien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BMWK>. URL: [https://www.bmwk.de/Redaktion/DE/Infografiken/Schlaglichter/2021/09/ethische-leitlinien-fuer-kuenstliche-intelligenz-download.pdf?\\_\\_blob=publicationFile&v=1](https://www.bmwk.de/Redaktion/DE/Infografiken/Schlaglichter/2021/09/ethische-leitlinien-fuer-kuenstliche-intelligenz-download.pdf?__blob=publicationFile&v=1)

17)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Ebenda.

18) 독일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수집한 이용자들의 막대한 데이터에 관한 권리 주체의 귀속 문제를 ‘데이터소유권(Dateneigentum)’이라는 개념 하에 논의하고 있다.

19) 예시카 헤젠의 주장은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Ebenda.

20) Science media center germany. (2023. 4. 3). Ebenda.

실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이자 ‘책임’을 지는 주체여야 한다. 또한 AI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별표’를 부착하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1)</sup>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 상실의 위험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독일 법학계에서는 주로 ‘로보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의 귀속,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법률적 보호(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와 저널리즘 로봇이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IV. 독일의 ‘로보 저널리즘’을 둘러싼 법률적 논의

### 1. 로보 저널리즘의 범위와 기본법

로보 저널리즘(Robo-Journalismus)<sup>22)</sup>은 챗GPT의 성공적인 출시에 앞서 독일 법학의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개념이다.<sup>23)</sup> 로보 저널리즘은 “반자동 혹은 완전 자동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인공시스템”<sup>24)</sup>을 의미하며, 저널리스트로서 기능하는 “저널리즘 로봇 (Journalismusroboter)”을 통해 실현된다. 다만, 저널리즘 로봇은 단순히 ‘자동로봇’에 불과하다. 독일 공업규격인 ‘DIN19233’은 자동로봇을 “미리 결정된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지정된 관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작이 결정되고 입력 및 상태 변수로 출력 변수가 형성되는, 스스로 작동하는 인공시스템”<sup>25)</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 로봇은 편집자의 개입 없이 전체 또는 일부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서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활용된다. ‘DIN19233’은 자동로봇의 자동화 단계를 완전 혹은 반자동으로 구분한다. 완전 자동은 “스위치 온 또는 오프 프로세스를 제외하고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자동화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반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개입이나 안내 없이 독립적으로 저널리즘 작업을 수행하는 “저널리즘 로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sup>26)</sup>

21) Weberling, J. (2018). Ebenda., S. 735, 739.

22) Uphue, S., in: Hoeren, u.a. (Hg.), Handbuch Multimedia-Recht, 58.EL März 2022, Teil 15.3 Big Data in Online-Medien und auf Plattformen, Rn. 63.

23) Weberling, J. (2018). Ebenda.

24) “로보 저널리즘(Robo-Journalismus)”과 “로봇 저널리즘(Roboterjournalismus)”은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베버링(J. Weberling)의 문헌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 문헌에서는 “로보 저널리즘”으로 칭하여 해당 개념을 설명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25) Begriffe zur Automatisierung (DIN 19233), veröffentlicht unter <https://docplayer.org/601418-Begriffe-zur-automatisierung-din-19233.html>

26) Weberling, J. (2018). Ebenda., S. 735.

법률적 관점에서 언론의 개념에 로보 저널리즘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보호 범위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공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검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언론이 자유국가의 필수 요소이며, 특히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치적 자유 언론은 현대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sup>27)</sup>

기본법에서 언급된 ‘언론’ 개념은 “인쇄물” 또는 “인쇄된 이미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 및 영화를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하여 방송과 영화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에서 해당 조항은 언론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언론의 개념에 대해 발전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sup>28)</sup>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출판물의 특정 형태와 무관하게(출판물이 인쇄된 형태이든 다른 형태로 존재하든지 무관하게) 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 출판물이 관련되어 있는 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sup>29)</sup> 따라서 출판물의 기술적인 제작과정, 배포 혹은 제작물의 내용과 무관하게 출판물이 해당 의사소통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언론’의 개념으로 보호하고 있다. 기본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된 언론의 개념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고, ‘통합적’ 시각에서 ‘언론행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sup>30)</sup>

기본법은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인쇄물뿐만 아니라 영화 및 방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정보 매체를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적 배포의 형태(로보 저널리즘)도 기본법상 언론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sup>31)</sup>

## 2. ‘저널리즘 로봇’에 대한 법률적 시각

### 1) 책임 귀속

저널리즘 로봇이 주관적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앞서 언급한 ‘보조수단’으로써 생성형 AI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저널리즘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저널리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이 로봇은 저널리스트의 개입

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슈피겔(Spiegel) 판결’ 이후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자유 의미와 보호 범위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 언론자유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주관적 기본권이다. Vgl. BVerfG NJW 1966, 1603 und 1605.

28) BeckOK GG/Schemmer, 55. Ed. 15.5.2023, GG Art. 5 Rn. 42 f.

29) BVerfGE 66, 134; 107, 280.

30) Hömig, D./Wolff, H. (2022)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13. Aufl., GG Art. 5 Rn. 14.

31) Mann/Smid, in: Spindler/Schuster(Hg.), Recht der elektronischen Medien, Presserecht Rn. 5 f. dazu Weberling, J. (2018). Medienrechtliche Bedingungen und Grenzen des Roboterjournalismus. (NJW), S. 735, 737.

하에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작한다. 저널리스트가 일상적인 제작과정에서 모든 유형의 출판물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기사의 배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익과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면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인 균형조정이 필요한데, 저널리즘 로봇이 지능적으로 프로그래밍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는 없다.<sup>32)</sup> 또한 기본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이다.<sup>33)</sup>

## 2) 저작권과 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의한 저작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계나 컴퓨터의 활동이 인간의 창작 활동을 대체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sup>34)</sup> 반면에 저작권자가 컴퓨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컴퓨터에 적절한 지시 및 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결과가 명확하게 계획되고 결정된다면 인간의 창작 활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sup>35)</sup> 따라서 보조수단으로써 이용되는 저널리즘 로봇은 저작자(편집자나 저널리스트)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상 저작자에서 제외된다.

저널리즘 로봇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다. 편집자나 저널리스트가 AI 소프트웨어를 보조도구로써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법적 책임을 진다. 그들의 법적 책임은 주언론법(Ladespressegesetze)에 따라 판단한다. 이 소프트웨어가 저널리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 보조적 도구의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현존하지 않는다.<sup>36)</sup>

## V. 마치며

생성형 AI는 저널리스트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생성형 AI는 날씨, 스포츠, 금융 등 뉴스 제작에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윤리적·법률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점차 저널리스트의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저널리스트의 일자리 상실 위험과 아울러 편향된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편견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 허위 정보의 생산 및 확산

32) Weberling, J. (2018), Ebenda., S. 735, 737 f.

33) BVerfG NJW 1966, 1603 ff.

34) Schricker/Loewenheim/Loewenheim/Leistner UrhG § 2 Rn. 38 f.

35) Schricker/Loewenheim/Loewenheim/Leistner UrhG § 2 Rn. 40.

36) Weberling, J. (2018), Ebenda., S. 738.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AI로 허위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또 이를 걸러낼 수도 있어 ‘객관성’, ‘진실성’ 등과 같은 가치를 속성으로 하는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다면 생성형 AI가 저널리스트에게 가져다줄 이 점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 앞서 헤젠(J. Heseen)은 언어를 ‘관계구축’의 수단으로 보았다.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와 독자의 관계에서 신뢰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콘텐츠 제작자가 사람인지 AI인지 독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AI가 제작한 콘텐츠에 식별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헤젠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 수집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AI 설계와 통제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즉,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데이터 이용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비윤리적인 AI 개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권한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AI를 연구 개발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생성형 AI는 저널리스트에게 보조수단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독일 법학계의 ‘로보 저널리즘’과 관련된 논의는 AI의 이러한 역할을 잘 보여준다. 저널리스트의 개입 없이 ‘완전 자동’으로 저널리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저널리스트는 저널리즘 로봇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권이 여전히 저널리스트에게 있다는 것이 독일 법학계의 시각이다. 보조수단으로써 저널리즘 로봇을 사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리의 귀속 주체는 저널리스트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저널리즘 로봇은 저작권 및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저작권법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로봇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기본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저널리즘 로봇이 아닌 ‘인간’ 저널리스트가 향유한다.

무엇보다 편집자와 저널리스트가 저널리즘 로봇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하는 현상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저널리즘 로봇이 저널리스트를 완전히 대체하여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날까지 아직은 시간이 있다. 생성형 AI로 창출하는 저널리즘의 윤리적·법률적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저널리스트가 로봇의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통제하고 그 결과물을 감독해야 한다는 독일의 사례에서 기술 남용을 막고 인간적 가치에 따라 저널리즘을 설계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